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7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임미애·박해철·박지원

조계원 · 강훈식 · 민형배

김 윤 · 임호선 · 권향엽

안호영 · 문대림 · 주철현

박희승 • 윤준병 • 이병진

송옥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법률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등"을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수료) ① • ② (생	제16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	
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3
촉진 <u>등</u> 수수료 감면이 필요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
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탁 운영 계약 등</u>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